

정기적금 상품설명서
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 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**상 품 명** : 정기적금
- **상품특징** :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목돈마련상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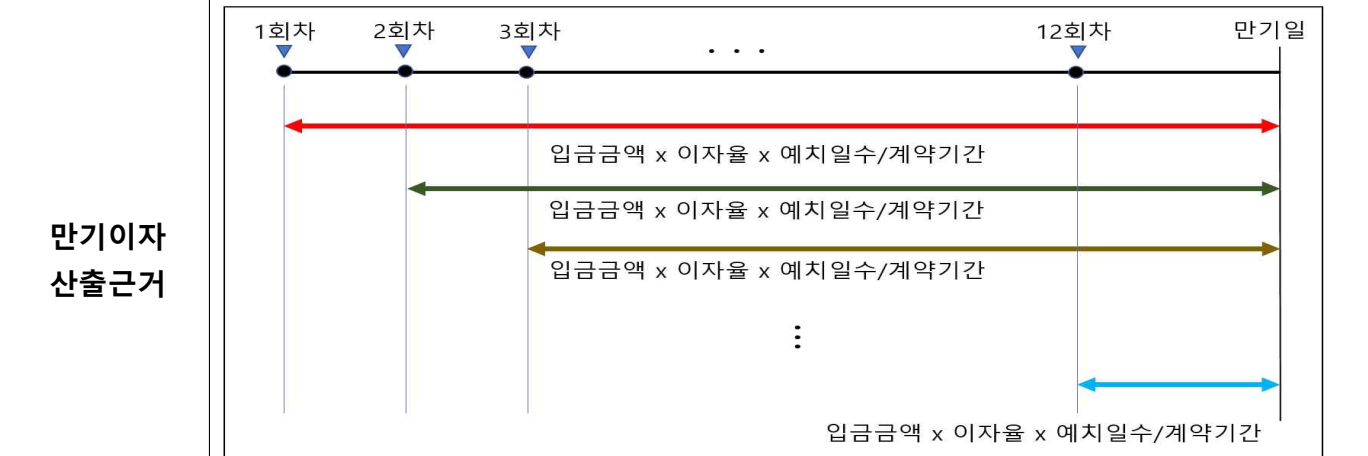
2 거래 조건

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구 분	내 용														
가입대상	• 제한없음														
가입금액	• 1만원 이상														
가입기간	• 6개월 이상 60개월 이하(월 단위)														
이자지급시기	• 만기 일시지급식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														
예금자 보호여부 [해당]	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 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														
제한 사항	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• 질권 설정 : 가능 (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														
이자율	기본	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적용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20 1543 1437 1644"> <thead> <tr> <th>계약기간</th> <th>6개월</th> <th>12개월</th> <th>24개월</th> <th>36개월 이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본이자율</td> <td>2.00%</td> <td>4.00%</td> <td>4.10%</td> <td>4.2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계약기간	6개월	12개월	24개월	36개월 이상	기본이자율	2.00%	4.00%	4.10%	4.20%
	계약기간	6개월	12개월	24개월	36개월 이상										
	기본이자율	2.00%	4.00%	4.10%	4.20%										
우대	•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조건별 우대이자율 적용 • 적용조건 : 해당사항 없음														
만기 후	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20 1879 1437 2078"> <thead> <tr> <th>경과기간</th> <th>이 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개월이내</td> <td>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</td> </tr> <tr> <td>1개월 초과</td> <td>보통예금 이율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경과기간	이 율	1개월이내	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	1개월 초과	보통예금 이율					
경과기간	이 율														
1개월이내	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														
1개월 초과	보통예금 이율														

구 분	내 용
-----	-----

•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(원미만 절사)
[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] 입금금액 × 약정이율 × 일수(입금일~만기일 전일)/365



※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,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,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.
 ①입금지연이자=(총지연일수-총선납일수)/365×입금지연이율[=약정이율+2.0%]×월입금금액
 ②월평균지연일수=(총지연일수-총선납일수)/계약월수

수익률 •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*)을 공제하여 지급 * 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

만기의 자동해지 •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(타행포함)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.

• 1개월 미만 : 계약일의 보통예금 이율 범위내 적용
 • 1개월 이상 : 약정이율 × 차등률
 [단, 최저금리 : 약정이율 × 50%]

예치기간	이 율	비 고
1개월 미만	연 0.2%	보통예금 이율
01개월 이상 ~ 06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50%	약정이율의 50%로 최저 금리 설정
06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55%	
12개월 이상 ~ 24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60%	
24개월 이상	약정이율 × 70%	



※ 가입기간이 "1개월 미만"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**약정이율의 50% 지급이 어려울 수** 있으며, 위 그림은 중도해지이율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, **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닐 수 있습니다.**

구 분	내 용
위법계약 해지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세제혜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가입대상 : 만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분할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불가
만기 앞당김 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 ※ 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
만기일경과후 부금 수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기일에 계약월수의 1/2이상 입금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.5배 기간내에서 만기후에도 월부금 입금이 가능합니다.
자동재예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자동재예치 가능. 다만,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, 계좌번호는 동일합니다.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,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검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※ 자동재예치 제외(불가) 사유 :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,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,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
연계·제휴 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사항 없음

3 |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

-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** :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 (053-256-40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kusb.co.kr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금리변동형 정기에금**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, **금리 하락기**에는 **약정금리 인하**로 **소비자에게 불리**할 수 있습니다.

● 금융용어 설명

용 어	내 용
압류	국가가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,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
가압류	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
질권설정	자기 또는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,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
경과기간	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 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

※ 출처 :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, 금융감독원 알기쉬운 금융용어

비대면 정기적금 상품설명서
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 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**상 품 명** : 비대면 정기적금
- **상품특징** :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목돈마련상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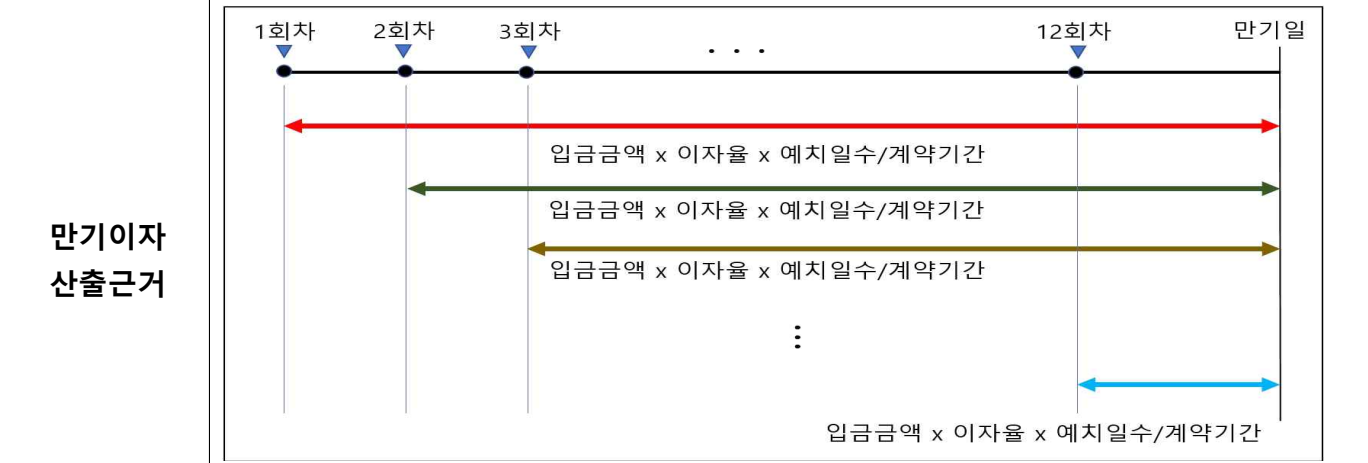
2 거래 조건

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구 분	내 용														
가입대상	• 제한없음 (미성년자, 외국인, 재외국민, 해외 거주자는 불가)														
가입금액	• 1만원 이상														
가입기간	• 6개월 이상 60개월 이하(월 단위)														
이자지급시기	• 만기 일시지급식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														
예금자 보호여부 [해당]	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 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														
제한 사항	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• 질권 설정 : 가능 (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														
이자율	기본	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율 적용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19 1541 1436 1646"> <thead> <tr> <th>계약기간</th> <th>6개월</th> <th>12개월</th> <th>24개월</th> <th>36개월 이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본이자율</td> <td>2.00%</td> <td>4.00%</td> <td>4.10%</td> <td>4.2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계약기간	6개월	12개월	24개월	36개월 이상	기본이자율	2.00%	4.00%	4.10%	4.20%
	계약기간	6개월	12개월	24개월	36개월 이상										
	기본이자율	2.00%	4.00%	4.10%	4.20%										
우대	•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조건별 우대이율 적용 • 적용조건 : 해당사항 없음														
만기 후	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19 1877 1436 2078"> <thead> <tr> <th>경과기간</th> <th>이 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개월이내</td> <td>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</td> </tr> <tr> <td>1개월 초과</td> <td>보통예금 이율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경과기간	이 율	1개월이내	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	1개월 초과	보통예금 이율					
경과기간	이 율														
1개월이내	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														
1개월 초과	보통예금 이율														

구 분	내 용
-----	-----

•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(원미만 절사)
[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] 입금금액 × 약정이율 × 일수(입금일~만기일 전일)/365



※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,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,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.
 ①입금지연이자=(총지연일수-총선납일수)/365×입금지연이율[=약정이율+2.0%]×월입금금액
 ②월평균지연일수=(총지연일수-총선납일수)/계약월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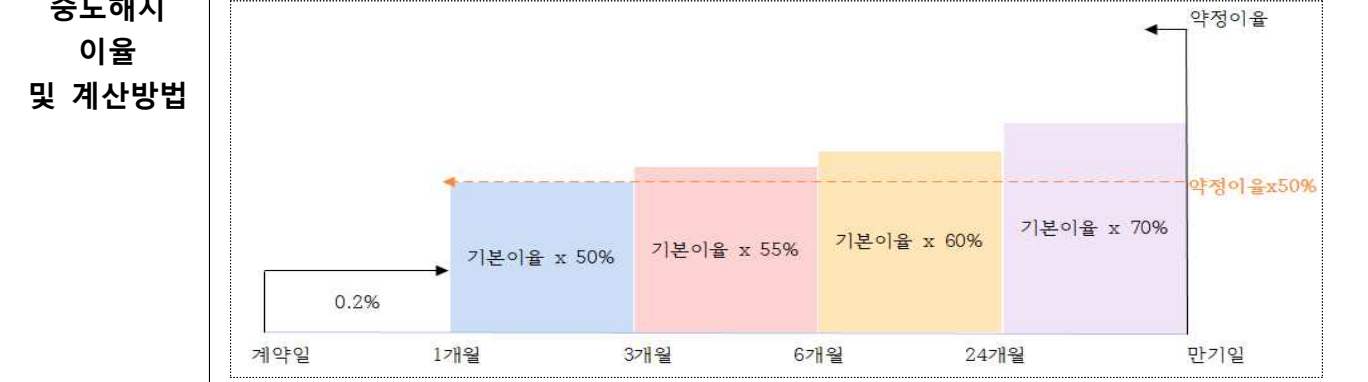
수익률
 •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*)을 공제하여 지급 * 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

만기의 자동해지
 •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(타행포함)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.

• 1개월 미만 : 계약일의 보통예금 이율 범위내 적용
 • 1개월 이상 : 약정이율 × 차등률
 [단, 최저금리 : 약정이율 × 50%]

예치기간	이 율	비 고
1개월 미만	연 0.2%	보통예금 이율
01개월 이상 ~ 06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50%	약정이율의 50%로 최저 금리 설정
06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55%	
12개월 이상 ~ 24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60%	
24개월 이상	약정이율 × 70%	

• 계산방법<예시>



※ 가입기간이 "1개월 미만"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**약정이율의 50% 지급이 어려울 수** 있으며, 위 그림은 중도해지이율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, **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닐 수 있습니다.**

구 분	내 용
위법계약 해지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세제혜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가입대상 : 만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분할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불가
만기 앞당김 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 ※ 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
만기일경과후 부금 수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기일에 계약월수의 1/2이상 입금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.5배 기간내에서 만기후에도 월부금 입금이 가능합니다.
자동재예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자동재예치 가능. 다만,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, 계좌번호는 동일합니다.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,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검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※ 자동재예치 제외(불가) 사유 :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,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,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
연계·제휴 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사항 없음

3 |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

-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** :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 (053-256-40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kusb.co.kr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금리변동형 정기예금**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, **금리 하락기**에는 **약정금리 인하**로 **소비자에게 불리**할 수 있습니다.

● 금융용어 설명

용 어	내 용
압류	국가가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,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
가압류	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
질권설정	자기 또는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,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
경과기간	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 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

※ 출처 :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, 금융감독원 알기쉬운 금융용어

정기적금(인터넷뱅킹) 상품설명서
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저축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**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**
- ◆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 되지 않습니다.

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**상 품 명** : 정기적금(인터넷뱅킹)
- **상품특징** :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지급받는 목돈마련상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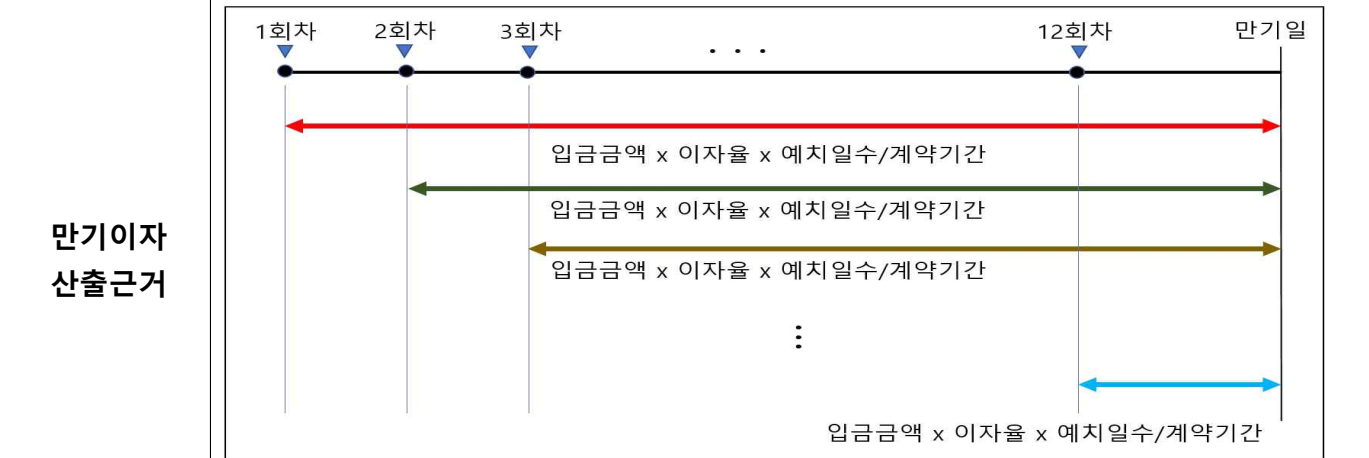
2 거래 조건

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구 분	내 용														
가입대상	• 제한없음														
가입금액	• 1만원 이상														
가입기간	• 6개월 이상 60개월 이하(월 단위)														
이자지급시기	• 만기 일시지급식 : 만기(후)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														
예금자 보호여부 [해당]	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"5천만원까지" (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														
제한 사항	•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• 질권 설정 : 가능 (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90% 이내로 가능) •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														
이자율	기본	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적용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20 1541 1437 1644"> <thead> <tr> <th>계약기간</th> <th>6개월</th> <th>12개월</th> <th>24개월</th> <th>36개월 이상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본이자율</td> <td>2.00%</td> <td>4.00%</td> <td>4.10%</td> <td>4.2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계약기간	6개월	12개월	24개월	36개월 이상	기본이자율	2.00%	4.00%	4.10%	4.20%
	계약기간	6개월	12개월	24개월	36개월 이상										
	기본이자율	2.00%	4.00%	4.10%	4.20%										
우대	•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조건별 우대이자율 적용 • 적용조건 : 해당사항 없음														
만기 후	•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별 만기후이자율 적용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20 1877 1437 2078"> <thead> <tr> <th>경과기간</th> <th>이 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개월이내</td> <td>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</td> </tr> <tr> <td>1개월 초과</td> <td>보통예금 이율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	경과기간	이 율	1개월이내	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	1개월 초과	보통예금 이율					
경과기간	이 율														
1개월이내	당초 약정금리 또는 만기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약정금리 중 낮은 이율														
1개월 초과	보통예금 이율														

구 분	내 용
-----	-----

•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(원미만 절사)
[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] 입금금액 × 약정이율 × 일수(입금일~만기일 전일)/365



※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,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 지연이자를 차감하거나,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.
 ①입금지연이자=(총지연일수-총선납일수)/365×입금지연이율[=약정이율+2.0%]×월입금금액
 ②월평균지연일수=(총지연일수-총선납일수)/계약월수

수익률 •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(15.4%*)을 공제하여 지급 * 이자소득의 14% + 이자소득세의 10%(1.4%)를 징수

만기의 자동해지 • 예금주와 만기의 자동해지에 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만기 도래에 따라 해당상품을 자동해지하고 예금주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(타행포함)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.

• 1개월 미만 : 계약일의 보통예금 이율 범위내 적용
 • 1개월 이상 : 약정이율 × 차등률
 [단, 최저금리 : 약정이율 × 50%]

예치기간	이 율	비 고
1개월 미만	연 0.2%	보통예금 이율
01개월 이상 ~ 06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50%	약정이율의 50%로 최저 금리 설정
06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55%	
12개월 이상 ~ 24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60%	
24개월 이상	약정이율 × 70%	

중도해지 이율 및 계산방법

• 계산방법<예시>

※ 가입기간이 "1개월 미만"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**약정이율의 50% 지급이 어려울 수** 있으며, 위 그림은 중도해지이율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, **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닐 수 있습니다.**

구 분	내 용
위법계약 해지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,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.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(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)
세제혜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 가입대상 : 만65세 이상의 거주자,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,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,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5.18민주화운동 부상자 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※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분할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불가
만기 앞당김 해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 ※ 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
만기일경과후 부금 수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기일에 계약월수의 1/2이상 입금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.5배 기간내에서 만기후에도 월부금 입금이 가능합니다.
자동재예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자동재예치 가능. 다만,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, 계좌번호는 동일합니다.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,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검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※ 자동재예치 제외(불가) 사유 :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중단된 경우,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,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
연계·제휴 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당사항 없음

3 |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등

- 민원 및 분쟁 관련사항** :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, 고객센터 (053-256-40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kusb.co.kr)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금리변동형 정기예금**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, **금리 하락기**에는 **약정금리 인하**로 **소비자에게 불리**할 수 있습니다.

● 금융용어 설명

용 어	내 용
압류	국가가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한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, 채무자는 압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상실하며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됨
가압류	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
질권설정	자기 또는 제삼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의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제공하여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,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일
경과기간	(해당 시간을) 완전히 지나간 기간 * (예시)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

※ 출처 :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, 금융감독원 알기쉬운 금융용어